



# 19년 하반기 (2차)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자모집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접수기간 전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이 계약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1.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84호(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주택내역 참조)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시간은 10:00~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1·2·3형)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분	내용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li> <li>※ 주택별 임대조건 : 「붙임첨부」 주택내역 참조</li> </ul>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임대차기간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li> </ul>

- 월 임대료 외 해당주택별 별도의 청소용역비 등 공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 추가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3. 입주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19.1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공사가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순위	세부자격요건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li> <li>•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 미달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li> <li>*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 이하인 자</li> <li>·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 자</li> </ul>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li> </ul>
4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li> </ul>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 신청가능)

####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5,401,814원 이하	3,781,270원 이하	2,700,907원 이하
4인 가구	6,165,202원 이하	4,315,641원 이하	3,082,601원 이하
5인 가구	6,699,865원 이하	4,689,906원 이하	3,349,933원 이하
6인 가구	7,348,891원 이하	5,144,224원 이하	3,674,446원 이하
7인 가구	7,997,917원 이하	5,598,542원 이하	3,998,959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소득산정 및 자산확인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 소득 산정방법

-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임)

구분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입주신청

- 공급신청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접수기간 중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예시: 2,3,4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자는 2,3,4순위)

## ■ 입주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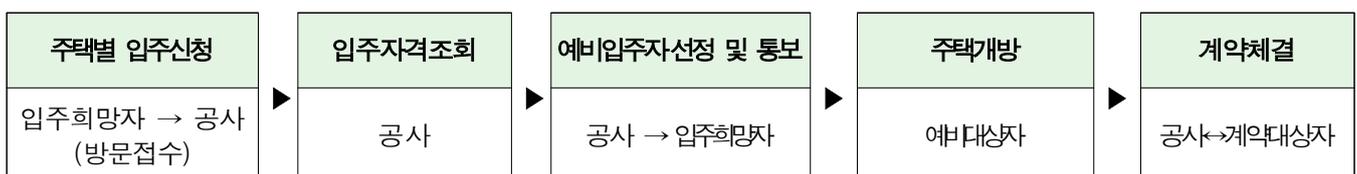
-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시 아래의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선정순위 : 사업대상지역\*거주시 (전입일이 빠른 자) → 타지역 거주시(추첨)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

## 4.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 입주자 선정절차



## ■ 공급일정 및 장소

주택개방	신청자격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최종발표	접수 및 계약장소
20.01.09(목)~01.11(토) 10:00~16:00	1순위	20.01.13(월)~01.14(화) 10:00~16:00	20.02.28 (예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본사 1층 접수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
	2~4순위	20.01.15(수)~01.17(금) 10:00~16:00		

- 주택개방 및 열람은 3일간 해당시간까지만 개방할 예정이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음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임(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자격별 접수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당일 해당호수가 선순위 마감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조기 확인 후 접수바람 (마감일자에 홈페이지 게시)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예시: 2,3,4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자는 2,3,4순위)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함

## 5.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7)** 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홈페이지 및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은 홈페이지 및 접수장소 비치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	주민센터	1통

		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li> </ul>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li> </ul>	주민센터	1통
추가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p>&lt;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ul>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li> </ul>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li> <li>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li> </ul>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1순위내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li> </ul>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li> </ul>	주민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li> <li>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li> <li>※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지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접수가능</li> </ul> </li> <li>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li> </ul> </li> </ul>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신청자 작성
저소득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li> <li>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증명서</li> </ul>	주민센터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7.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li> </ul>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li> <li>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입주자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th> <th rowspan="2">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th> <th colspan="2">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th> </tr> <tr> <th>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th> <th>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th> </tr> </thead> <tbody> <tr> <td>70%초과 100%이하</td> <td>100%초과 105%이하</td> <td>40%</td> <td>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li> </ul>	입주자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05%이하	40%	80%
입주자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05%이하	40%	80%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li> </ul>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li> </ul>										
주소변경 통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주택도시기금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li>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만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li> </ul>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8. 접수장소 및 기타 문의처

**경기도시공사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① 지하철 : 분당선 매탄권선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약900m(도보 15분)

② 버스 : 51, 83-1, 88, 88-1, 92, 3007, 7001, 8800번 탑승 후 정류장(평생교육학습관·남수원중학교)에서 하차하여 약 500m(도보 5분)

**관련 문의처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2019. 12. 27.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의 소유기준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수월액</li> <li>-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 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